

의안 번호	2305	울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----------	------	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7. 1.(월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4. 7. 1.(월)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4. 7. 16.(화)

2. 제안이유

-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(안 제1조~안 제2조)
나. 예산 지원 및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안 제5조)
다.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라.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4. 근거법규

- 가.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7조, 제11조, 제12조, 제14조
나.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, 제3조

5. 검토의견

-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,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근 거 법 규

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제4조(신고) ①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사람은 명칭, 활동구역,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자율방범대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해산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자율방범활동)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(이하 “자율방범활동”이라 한다)을 한다.

1.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
2. 청소년 선도 및 보호
3. 시 · 도경찰청장 · 경찰서장 · 지구대장 · 파출소장(이하 “시 · 도경찰청장등”이라 한다)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
4.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 · 도지사라 한다),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또는 읍장 · 면장 · 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

제11조(포상) 경찰청장, 시·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읍장·면장·동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제12조(중앙회·연합회·연합대 설립 등) 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(이하 “중앙회”라 한다)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에 시·도자율방범연합회(이하 “연합회”라 한다) 및 시·군·구에 시·군·구자율방범연합대(이하 “연합대”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
② 중앙회는 경찰청에게, 연합회는 시·도경찰청장에게, 연합대는 경찰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.

③ 중앙회, 연합회 및 연합대(이하 “중앙회등”이라 한다)의 조직·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제14조(경비 등의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·장비의 구입, 교육·훈련,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·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조 (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(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·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.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의 도지사(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·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)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법활동(이하 “자율방법활동”이라 한다)을 위한 복장·장비·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·보수비
 2. 자율방법활동을 위한 방범초소·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(시설을 임차 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) 및 운영비
 3.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·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
 4. 그 밖에 경찰청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자율방법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-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법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,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3조 (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·군·구자율방범연합대(이하 “연합대”라 한다)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월할 수 있다.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·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)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·보수비
2.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(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) 및 운영비
3.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·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
4. 그 밖에 경찰청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·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
-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,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